

제2025-86호 2025년 9월 26일(금)	시  보 여수시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42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여수시 고시 제2025-424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15호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자 모집
- 여수시 공고 제2025-2826호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 여수시 공고 제2025-2833호 전문건설업 폐업-주식회사 와이지건설
- 여수시 공고 제2025-2841호 남해 서면여수신터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여수시 공고 제2025-284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죽림 1지구 B1-33-4)
- 여수시 공고 제2025-2847호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울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여수시 공고 제2025-284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35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38호 「여수시 라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39호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45호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846호 「여수시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25.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신기동 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320, 공원: 227)

나. 명 칭: 여수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6,713m²

나. 규 모

구 분	결 정(㎡)	금회 시행(㎡)	비고
경관녹지 320	3,104	3,104	
어린이공원 227	3,609	3,60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신기주공지역주택조합 김민곤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4. 7.11. ~ 2027. 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 설치되는 공원, 녹지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경관녹지) (변경)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1필지			7,888	3,104						
1	화양동	산63-3	임	99	99	김감두	시전리 333				기정
		산63-3	임	99	99	-	-	김감두	시전리 333		변경
2	화양동	산67-3	임	1,785	822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3	화양동	산68-4	임	397	200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4	화양동	49-2	답	288	103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5	화양동	50-2	전	1,086	124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6	화양동	53-1	전	1,122	231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7	화양동	98-1	전	1,513	677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8	화양동	101-3	전	55	1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9	화양동	102-2	전	1,050	354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10	화양동	108-2	전	458	458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11	화양동	924-20	구	35	35	국토교통부					기정
		924-20	구	35	35	기획재정부					변경

○ 토지조서(어린이공원)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2필지			35,546.8	3,609						
1	신기동	3	대지	32,824.8	3,383.0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	-	-	(580/580)
2	신기동	175	임	2,722	226	신기주공 지역주택조합	여수시 쌍봉로 188, 2층(신기동)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25.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응천동 1865-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응천공원)사업

나. 명 칭 : 여수시립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면 적 : 기정) $A=4,977\text{m}^2$ → 변경) $A=4,895\text{m}^2$

나. 규 모 : 기정) 소로 1-2호선 $L=16\text{m}$, $B=11\text{m}$, 소로 3-84호선 $L=280\text{m}$, $B=6.0\text{m}$, 소로 3-73호선 $L=191\text{m}$, $B=4.5\text{m}$, 녹지 $A=2,190\text{m}^2$ (원상복구)
변경) 소로 1-2호선 $L=16\text{m}$, $B=11\text{m}$, 소로 3-84호선 $L=281\text{m}$, $B=5.0\text{m}$, 소로 3-86호선 $L=190\text{m}$, $B=4.5\text{m}$, 녹지 $A=2,190\text{m}^2$ (원상복구)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21.11.11.~2025.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불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문화유산과(☎061-659-4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여수시 응천동	1865-1	공	335,644	4,977		여수시				기 정
1	여수시 응천동	1865-1	공	335,644	4,895		여수시				변 경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 시스템을 갖춘 여수시만의 택시 콜 및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코자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일

여수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

나. 사업규모 : 택시 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다. 사업비 및 사업내용

1) 사업비 : 비예산

2) 사업내용 : 택시 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바우처 정산 기능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2. 사업자 선정

가.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비예산사업으로 참여업체 동일점수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안부 예규 제325호)

3. 참가자격 및 제안요건 : (상세내역)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제출 및 발표·평가

가. 일 찰 공 고 : 2025년 9월 23일 ~ 10월 10일까지

나. 사업설명회 : 생 략

다. 제안서 제출 : 2025년 10월 16일 ~ 10월 17일까지

라. 제안서 평가 : 2025년 10월 24일(금) 14:00

- 장 소 : 여수시 시청4길 47(학동), 여수시 보건소 회의실(3층)

*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별도 유선 안내)

마. 평가위원회 구성 : 9명

바. 제안설명 : PT발표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함

사. 기타 자세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름

5. 기타 사항

가. 사업참여자는 참가등록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나. 기타 제안서 작성 및 과업 관련 문의사항은 교통과 교통행정팀(☎061-659-4129)으로 연락하시기 바람.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사 업 비 : 비예산

라.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구축
-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구축
- 콜센터 시스템(지능형 콜센터 포함) 구축
-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2. 모집기간 : 2025. 9. 24.(수) ~ 10. 2.(목)

3. 모집인원 : 예비평가위원 6명 이상(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4. 모집분야 : 교통 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특히, 모빌리티기술에 대한 분야 우선)

5. 자격요건

- 가. 1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기사 학위 소지자
- 나.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 다. 3년 이상 해당분야 정부투자기관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7급 이상 경력자
- 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6. 제외대상

- 가.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자
 - 나.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 다.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 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 마.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 자격요건 및 제척 ·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방문, 이메일 접수

※ 공문, 이메일 접수시 제출서류에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파일 제출(jeadong@korea.kr)

8. 제출서류

- 가.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다. 보안각서 1부.

라. 자격증명서류 1부.(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9. 접 수 처 : 여수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여수시 시청로 1, 교통과)

10.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2명(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위원 2명 추가 선정)

나. 선정방법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중 2개씩 번호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다. 선정결과 안내 :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 연락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일시 : 2025. 10. 24.(금), 14:00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 통지

나. 장 소 : 여수시 시청4길 47(학동), 여수시 보건소 회의실(3층)

다. 내 용 : 참가업체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평가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 (2025. 10. 24.)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봄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 수당, 교통비 등 지급

마.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보안 유지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수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61-659-4129)으

로 문의

- 붙임 1.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보안각서 1부. 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연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연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경력자격증 등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미제출시 후보 등록 제외)

위와 같이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작성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3】

평가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시스템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 선정을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제재가 있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주식회사 와이지건설 (김*제)	전남 여수시 도원로 14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인천남동 15-09-03)	205511-0007626	2025.9.24.	사업포기 (면허반납)

2. 공고 기간: 2025. 9. 24. ~ 2025. 10. 8.(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9. 25.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2023. 07. 10 ~ 2031. 10. 30.까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남해서면~여수신덕 국도건설공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전라남도여수시 신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연장: L=8.080km ■ 폭 원: B=10.5~20.5m(4차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2.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 열람기간 : 2025. 9. 25. ~ 2025. 10. 14.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 9. 25. ~ 2025. 10. 14.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71)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284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우리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여수시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소라면 죽림리 죽림1지구 B1-33-4 근생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김평일

다. 시 공 자 : 주식회사 좌수영종합건설

라.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다움 김용일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B1-33-4

2) 대지면적 : 260.1㎡

3) 연 면 적 : 298.73㎡

4) 층 / 동 : 지상2층/1동

5) 용 도 : 사무소, 단독주택

6) 공사기간 : 2025. 9. 1.~ 2025. 12. 31.

7) 공사비 : 638,000,000원

8) 안전점검 비용 : 3,000,000원(VAT 별도)

바. 건축허가일 : 2025. 7. 10.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여수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148호

나. 결정방법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함.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5. 10. 1.(수) 10:00 ~ 10. 13.(월) 17:00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4) 서약서 1부[서식4]

- 6. 개찰일시 : 2025. 10. 15.(수) 이전 개별 통보(우선순위 1개 업체만 통보)
 - * 우선순위 업체(1,2순위)의 점수가 동일 할 경우 2개 업체 통보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개별 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 가. 제출기간 : 2025. 10. 16.(목) ~ 10. 20.(월)
- 나. 제출서류(사실확인 서류)
 -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 2)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과 기존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
-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 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1) 좌측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색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10. 16.(목) 10:00~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여수시청 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

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 점 처리합니다.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과(☎061-659-4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여수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2. 공정표 1부(별첨). 끝.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 사업명		
직무분야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수수료 없음
----------------------	---	---------------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자기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소 계	5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40	소 계	4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5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15	
3. 점검·진단 평가결과	5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5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A- 이상	5	
		· BBB- 이상	4	
		· BB- 이상	3	
		· B- 이상	2	
		· CCC+ 이하	1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 평가점수 × 10%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2. 수행가격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제안가격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70	80	90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65	75	85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60	70	80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55	65	75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50	60	70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45	55	65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40	50	60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35	45	55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30	40	50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25	35	45	
	· 예정가격 11번째 근접	20	30	40	
	· 예정가격 12번째 근접	15	25	35	
	· 예정가격 13번째 이하	10	20	30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수행능력	10점	평점=평가점수 X 10%
수행가격	90점	
합 계	100점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가격내용	사업명			
	제안가격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신청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하는「울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소불명, 소유자의 사망,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025. 9. 25.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울촌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나.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다. 사 업 위 치 : 울촌면 산수리 ~ 조화리 일원

2.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17.(22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시도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기 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보상협의 요청 공문(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포함) 수령장소
: 여수시 건설과 건설행정팀(☎ 061-659-4040)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경토산업개발주식 회사 (김동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22-라-06)	영업정지 5개월 (2025.9.25.~ 2026.2.2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2. 공고 기간: 2025. 9. 25. ~ 2025. 10. 9.(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하고
-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급수정지처분 예고 안내문 송달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하며
- 타조례와 중복, 도로명 주소 미반영, 조문 불일치 등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 (제4조 제1호) “급수장치 구분에 대한 문구 정비
현행) 급수장 → 개정) 급수장치
 - (제26조 제3항 제6호) 현행 조문과의 불일치 정비

- 현행) 제43조 제3항 → 개정) 제44조 제3항
- (제30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미반영 문구 정비
현행) 동일 번지내 → 개정) 동일 도로명 주소내
- (제40조 제1항 제3호) 다자녀 감면 기준 확대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 개정) 18세 미만 자녀 2명
- (제44조 제4항) 사생활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 항목 신설
- (별표5 서식) 제수수료표 중 관련 조항 정비
현행) 5. “제43조제2항” → 개정) 5. “제44조제2항”
- (별표6 서식)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제목란 관련 조항 정비
현행) 제46조 관련 → 개정) 제47조 관련
- (별표7 서식) 중수도의 수질기준(제6조의3 관련) 본 조문 삭제(‘24. 5. 17)에 따른 별표 서식 삭제
- (별지 제2호 서식) 감면 기준 확대에 따른 신청 서식 정비
사유란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추가

○ 여수시 수도급수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18조 제2항) 현행 조례와의 조문 불일치 정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 (개정) “감면대상자”
- (제19조) 현행 조례와의 조문 불일치 정비
현행) 제42조 → 개정) 제43조
- (제20조) 사생활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설
- (제21조) 개정 전 제20조를 제21조로 변경,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정비
현행) 제45조 → 개정) 제46조

3. 입법 예고기간 : 2025. 9. 24. ~ 10. 14.(21일간)

4.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수도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수도행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761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수도행정과
- E-Mail : skystep@korea.kr
- 전 화 : 061-659-5286
- F A X : 061-659-585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설치하는 급수장”을 “설치하는 급수장치”로 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번지내”를 “도로명주소 내”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은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2026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u>설치하는 급수장</u></p> <p>2. · 3. (생 략)</p>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 -----.</p> <p>1. ----- ----- <u>설치하는 급수장</u> <u>치</u></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② (생 략)</p> <p>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u>제43조제3항</u>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p> <p>7. (생 략)</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44조제3항</u>----- ----- -----</p> <p>7. (현행과 같음)</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생 략)</p> <p>⑥동일 건물 또는 동일 <u>번지내</u>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도로명주소</u> <u>내</u>----- ----- -----.</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 -----</p>

<p>4. ~ 7. (생략) ②·③ (생략)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 ③ (생략) <u>〈신설〉</u></p>	<p>4.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u></p>
--	---

별표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 수 수 료 표	(별표 5) 제 수 수 료 표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¹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1. 제6조제3항의 설계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¹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포함)</p> <p>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p> <p>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6,000원</p> <p>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5,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p>5. 제44조제2항의 급수정지처분 해제수수료</p> <p>급수관구경 32m/m까지 18,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0원</p>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6조 관련)				(별표 6)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7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현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사기 기타 부정현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 원	· 부정급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 원	· 부정급수 철거 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 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100,000 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하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40,000원 단, 가정용은 2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하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불이행하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4. 계량기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불이행하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4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불이행하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		4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불이행하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6. 시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6. 시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7. 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징수 처분	7. 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징수 처분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징수처분
9.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9. 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이행할때까지 징수처분

별표 7)은 삭제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7) 중수도의 수질기준 (제6조의3 관련)		(별표 7) 삭제	
중수도의 용도 항목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대장균군	1ml당 10을 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검출되지 아니할 것
잔류염소	검출될 것	0.2mg/ℓ 이상 일 것	-
외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도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10도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ℓ)	10을 넘지 아니할 것	10을 넘지 아니할 것	10을 넘지 아니할 것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수소이온 농도	ph5.8이상 8.5이하일 것	ph5.8이상 8.5이하일 것	ph5.8이상 8.5이하일 것
<p>※ 비고 : 1.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 청소작업 건설공사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p> <p>2. “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하천 및 분수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p> <p>3. 공업용으로 쓰는 중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개정안																																																						
<p>(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요금 []감면 []감면 해지 신청서</p> </div> <p style="font-size: small;">*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h style="width: 15%;">접수번호</th> <th style="width: 15%;">접수일자</th> <th style="width: 15%;">처리기간</th> </tr> <tr> <td>수용기번호 (관리번호)</td> <td></td> <td>업종</td> </tr> <tr> <td>주소</td> <td></td> <td>가구수</td> </tr> <tr> <td>성명</td> <td></td> <td>전화번호</td> </tr> <tr> <td>사유</td> <td>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td> <td></td> </tr> <tr> <td>감면대상자</td> <td>세대주 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td> <td>자격발생 (해지)일자</td> <td>전화번호</td> </tr> </table> <p>「여수시 수도요금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p> <p>여수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h style="width: 15%;">문의사항</th> <th style="width: 85%;">답변내용</th> </tr> <tr> <td>문의사항</td> <td>자격상실 접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접수서류</td> <td>(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명자료 (감면 정지신청) 해지 증명자료</td> </tr> </table>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right;">○10㎝×297㎜(복합지 80g/㎡ 또는 동등지 80g/㎡)</p>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용기번호 (관리번호)		업종	주소		가구수	성명		전화번호	사유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감면대상자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문의사항	답변내용	문의사항	자격상실 접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명자료 (감면 정지신청) 해지 증명자료	<p>(별지 제2호서식)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요금 []감면 []감면 해지 신청서</p> </div> <p style="font-size: small;">*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h style="width: 15%;">접수번호</th> <th style="width: 15%;">접수일자</th> <th style="width: 15%;">처리기간</th> </tr> <tr> <td>수용기번호 (관리번호)</td> <td></td> <td>업종</td> </tr> <tr> <td>주소</td> <td></td> <td>가구수</td> </tr> <tr> <td>성명</td> <td></td> <td>전화번호</td> </tr> <tr> <td>사유</td> <td>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input type="checkbox"/> 여수순환(18시간)회생자 등록 [] </td> <td></td> </tr> <tr> <td>감면대상자</td> <td>세대주 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td> <td>자격발생 (해지)일자</td> <td>전화번호</td> </tr> </table> <p>「여수시 수도요금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 []감면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p> <p>여수시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h style="width: 15%;">문의사항</th> <th style="width: 85%;">답변내용</th> </tr> <tr> <td>문의사항</td> <td>자격상실 접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접수서류</td> <td>(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명자료 및 유류 증명자료 (감면 정지신청) 해지 증명자료</td> </tr> </tab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x-small;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개이음 사전 동의서</p> <p>1. 본인 또는 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이음을 통하여 우리 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2. 이 불기판결 승인이 불의한 위 공무원의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번호 또는 차주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밀이 유출하는 경우 기밀하여 무효시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p> <p style="text-align: right;">년월일 (서명 또는 인)</p> <p>*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개이음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여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판결입니다. 다만, 동의 및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p> </div>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right;">○10㎝×297㎜(복합지 80g/㎡ 또는 동등지 80g/㎡)</p>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용기번호 (관리번호)		업종	주소		가구수	성명		전화번호	사유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input type="checkbox"/> 여수순환(18시간)회생자 등록 []		감면대상자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문의사항	답변내용	문의사항	자격상실 접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명자료 및 유류 증명자료 (감면 정지신청) 해지 증명자료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용기번호 (관리번호)		업종																																																					
주소		가구수																																																					
성명		전화번호																																																					
사유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감면대상자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문의사항	답변내용																																																						
문의사항	자격상실 접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명자료 (감면 정지신청) 해지 증명자료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수용기번호 (관리번호)		업종																																																					
주소		가구수																																																					
성명		전화번호																																																					
사유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구 [] <input type="checkbox"/> 여수순환(18시간)회생자 등록 []																																																						
감면대상자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자격발생 (해지)일자	전화번호																																																					
문의사항	답변내용																																																						
문의사항	자격상실 접수 등의 경우에는 즉시 수도요금 감면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요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접수서류	(감면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증명자료 및 유류 증명자료 (감면 정지신청) 해지 증명자료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감면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및 장애인”을 “등의”로 한다.

제19조 중 “제42조”를 “제43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중 “제45조”를 “제46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급수정지처분 예고)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u>제20조</u>(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조례 <u>제45조</u>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는 시장이 부과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p> <p><u>제21조</u>(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 <u>제46조</u>----- ----- ----- -----.</p>
--	---

공 고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동문동) ‘더 로제 아델리움’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2개동 184세대/ '25. 10. 입주
- (쌍봉동)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 35, 여수 원더라움 더힐’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35: 2개동 244세대/ '25. 10. 입주
 - 여수 원더라움 더힐: 3개동 172세대/ '25. 10. 입주

2. 주요내용

- (동문동) ‘더 로제 아델리움’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현행) 17통 145반 → (개정) 18통 152반 *1통 7반 증가
- (쌍봉동)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 35, 여수 원더라움 더힐’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현행) 70통 436반 → (개정) 71통 449반 *1통 13반 증가

3.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2]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15.(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여수시 총무과(cgh31kr@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규칙명: 「여수시 라동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2)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동문동 및 쌍봉동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제3조 관련) [개정안]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문동	18통 (신설)	1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상가 1층~2층, 301호~303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601호~604호, 701호~704호, 801호~804호, 901호~904호
		2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1001호~1004호, 1101호~1104호, 1201호~1204호, 1301호~1304호, 1401호~1404호, 1501호~1504호, 1601호~1604호
		3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1701호~1704호, 1801호~1804호, 1901호~1904호, 2001호~2004호, 2101호~2104호, 2201호~2204호, 2301호~2304호
		4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2401호~2404호, 2501호~2504호, 2601호~2604호, 2701호~2704호, 2801호~2804호, 2901호~2904호
		5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2동) 상가 1층~2층, 302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6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2동)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1801호~1803호, 1901호~1903호, 2001호~2003호
		7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2동) 2101호~2103호, 2201호~2203호, 2301호~2303호, 2401호~2403호, 2501호~2503호, 2601호~2603호, 2701호~2703호, 2801호~2803호

동명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쌍봉동	9통	1	학동 69 ~ 72 일원
		2	학동 73 ~ 76 일원
		3	학동 77 ~ 78 일원
		4	학동 79 ~ 84 일원
		5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상가 1층~3층, 402호~3502호
		6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403호~3403호
		7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504호~3503호
		8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401호~3501호
		9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상가 1층~3층, 402호~3502호
		10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403호~3403호
		11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504호~3503호
		12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401호~3501호
	∴	∴	∴
	71통 (신설)	1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1동) 101호~1501호, 102호~1302호, 103호~803호, 104호~604호
		2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2동) 101호~1301호, 102호~1502호
		3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2동) 103호~1503호, 104호~1504호
		4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3동) 101호~1701호, 102호~1702호
		5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3동) 103호~1903호, 104호~1904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	통명	반명	관 할 구 역
동문동	-	-	-	동문동	18통	1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상가 1층~2층, 301호~303호, 401호~404호, 501호~504호, 601호~604호, 701호~704호, 801호~804호, 901호~904호
						2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1001호~1004호, 1101호~1104호, 1201호~1204호, 1301호~1304호, 1401호~1404호, 1501호~1504호, 1601호~1604호
						3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1701호~1704호, 1801호~1804호, 1901호~1904호, 2001호~2004호, 2101호~2104호, 2201호~2204호, 2301호~2304호
						4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1동) 2401호~2404호, 2501호~2504호, 2601호~2604호, 2701호~2704호, 2801호~2804호, 2901호~2904호
						5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2동) 상가 1층~2층, 302호~303호, 401호~403호, 501호~503호, 601호~603호, 701호~703호, 801호~803호, 901호~903호, 1001호~1003호, 1101호~1103호
						6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2동) 1201호~1203호, 1301호~1303호, 1401호~1403호, 1501호~1503호, 1601호~1603호, 1701호~1703호, 1801호~1803호, 1901호~1903호, 2001호~2003호
						7	관문동(더 로제 아텔리움 102동) 2101호~2103호, 2201호~2203호, 2301호~2303호, 2401호~2403호, 2501호~2503호, 2601호~2603호, 2701호~2703호, 2801호~2803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별표2]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구역	동	통명	반명	관할 구역
쌍봉동	9통	1	학동 69 ~ 72 일원	쌍봉동	9통	1	학동 69 ~ 72 일원
		2	학동 73 ~ 76 일원			2	학동 73 ~ 76 일원
		3	학동 77 ~ 78 일원			3	학동 77 ~ 78 일원
		4	학동 79 ~ 84 일원			4	학동 79 ~ 84 일원
			5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상가 1층~3층, 402호~3502호	
		6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403호~3403호				
		7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504호~3503호				
		8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1동) 401호~3501호				
		9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상가 1층~3층, 402호~3502호				
		10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403호~3403호				
		11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504호~3503호				
		12	학동(쌍용 더 플레티넘 여수35 102동) 401호~3501호				
	-	-	-	71통	1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1동) 101호~1501호, 102호~1302호, 103호~803호, 104호~604호	
			2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2동) 101호~1301호, 102호~1502호		
			3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2동) 103호~1503호, 104호~1504호		
			4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3동) 101호~1701호, 102호~1702호		
			5		학용동(여수 윈더라움 더힐 103동) 103호~1903호, 104호~1904호		

공 고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현행 규칙에는 표준화된 심사방식과 평가 기준 없어, 27개 읍·면·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심사 진행.
- 이에 형평성 논란 및 관련 민원 다수 발생함에 따라, 평가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시 차원의 통일된 기준안 마련 필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이·통장 후보자 심사방식 표준안 마련
 - 서류심사 50% + 면접심사 50%
 - 면접위원 구성: 3~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 포함
 - 이·통장 후보자 심사 평가 기준표 표준안 마련
 - 서류심사[50점] : 거주기간(15), 자원봉사실적(10), 직업상태(10), 참여기회균등(10), 행정기관상훈(5)
 - 면접심사[50점] : 책임감및주민화합능력(15), 역할인식및지원동기(15), 시정이해도(10), 시정참여도(5), 의사표현력및면접태도(5)
 - 실효성 부족 조문 개정
 - ‘리·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삭제
- ※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리·통을 미리 신설하는 사례에서 입주 전 공고 시 지원자 없는 문제 해소

3.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2]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15.(21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번호 061-659-5807)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주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총무과) (59675)
- 업무담당자 : 여수시 총무과(cgh31kr@korea.kr)
- 문의전화 : 061-659-3106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규칙명: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2)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해임된 경우 및 리·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을 “해임된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

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신설>

[별표 1] 아·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별표 1 아·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및 점수

단위:점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1. 거주기간	30년 이상	15	지역내 거주기간이 긴 후보자에게 우대
	20년 이상 - 30년 미만	12	
	10년 이상 - 20년 미만	9	
	5년 이상	6	
	5년 미만	3	
2. 지역봉사 실적	40시간 이상	10	공공기관, 학교, 마을공동체 등에서 봉사한 실적에 대해 우대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6	
	20시간 미만	4	
3. 직업 상태	직업 없음	10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후보자에게 우대
	자영업	8	
	근로자	6	
4. 명예직의 보유	직무 없음	4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후보자에게 우대
	신규	10	
	1회	8	
	3회 이상	4	
5. 생활가량 상황	2회 이상	5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후보자에게 우대
	1회	3	
	없음	2	

심사위원 : (서명)

<신설>

[별표 2] 아·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및 점수

단위:점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서류심사결과	합격	20	합격자 중 1명 이상을 아·통장 후보자로 임명한다.
	불합격	0	
면접 결과	합격	15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불합격	0	
지역 이해도	합격	10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후보자에게 우대
	불합격	0	
지역 참여도	합격	5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후보자에게 우대
	불합격	0	
지역 신뢰도	합격	5	지역내에서 활동중인 후보자에게 우대
	불합격	0	
합계		50	

심사위원 : (서명)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이·통장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및 결과

심사대상자 : _____

주소 : _____

평가항목	점수	기준	배점	특점	비고	
계	50					
1.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주민등록 기준 (과거 거주이력 포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2년 이상 ~ 5년 미만	9			
		2년 미만	6			
2. 자원봉사 실적	10	40시간 이상	10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자원봉사 인증기관 확인서 필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			
		2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6			
		2시간 미만	4			
3. 직업 상태	10	무 직	10		직장소재지 해당 읍·면·동 내/외 기준	
		자 영업	8			
		직업있음	근무지 관내			6
			근무지 관외			4
4. 참여기회 균등	10	신규	10		해당 읍·면·동 이·통장 역임 횟수	
		1회	8			
		2회	6			
		3회 이상	4			
5. 행정기관 상훈	5	2회 이상	5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표창 실적	
		1회	3			
		없음	2			

심사위원 :

(서명)

이·통장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

□ 평가 기준 및 결과

심사대상자 : _____

주소 : _____

평 가 항 목	점수	기 준	득점	질 문 사 항 (예시)
서류심사점수	50			
책임감 및 주민 화합 능력	15	상(10~15) 중(5~9) 하(0~4)		주민 불편·분쟁 대응 및 화합 방안 예시: “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역할 인식 및 지원 동기	15	상(10~15) 중(5~9) 하(0~4)		조례상 임무와 역할 숙지, 지원 이유 예시: “이·통장의 주요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정 이해도	10	상(7~10) 중(3~6) 하(0~2)		여수시(읍면동) 주요 시책, 행사, 현안 인식 예시: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시기와 주 행사장소를 말해보세요.”
시정 참여도	5	상(4~5) 중(2~3) 하(0~1)		시민으로서 시정 참여 여부, 향후 기여 의지 예시: “시에서 추진한 행사, 공청회, 축제 등에 참여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의사 표현력 및 면접 태도	5	상(4~5) 중(2~3) 하(0~1)		발표력, 논리성, 태도 예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 상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보세요.”
계	100			

심사위원 :

(서명)

(붙임 4)

개정안 전문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이장·통장은 해당 리·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신규 임명 및 그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재직 중인 이장·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각 호에 따라 이장·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주민총회 등” 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주민총회 등이 3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연임 이장·통장(임명 예정인 이장·통장 직전의 이장·통장으로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이장·통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 중 1명을 임명한다.

④ 읍장·면장·동장이 해당 리·통에 주민총회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에게 임명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때 임명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 이장·통장의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신청한 사람 중 1명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책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이장·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장·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1.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한다.
2. 서류심사는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3. 면접심사는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실시하되, 항목별 세부 질문은 평가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범위에서 각 읍장·면장·동장이 정할 수 있다.
4. 면접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혼합하여 구성하고, 민간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5. 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임명한다.

⑦ 이장·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 한다.

제5조(반장의 임명)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제6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6. 이장·통장·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한다.

제8조(임기) ①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임 이장·통장이 이장·통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2017. 4. 7. 규칙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집 공고 등 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모집공고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

여수시공고 제2025-2845호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의 연장 (안 제3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여수시 관광과
- 전자우편 : discretion0206@korea.kr
- 팩 스 : (061) 659-58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광과 (전화 061-659-3864, 팩스 061-659-5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u>2030년 12월 31일까지로</u> ----- ----- ----- ----- -----.</p>

공 고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준수가 요구되나, 내부 행정 절차(시장 방침 결재·변호사 선임·답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원회 준비·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현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원(위원)의 특성상 소송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소송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중요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별지 서식(제1호, 제2호 제3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안 제9조)

- <제1항>

- (기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 (변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 <제3항>

- (기존) 위원은 부시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해당 소송부서국장, 시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
- (변경)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의 본청(상시) 국장 8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

○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상향 조정(안 제11조)

- (기존)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변경)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건을 초과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게 초과 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별지 서식 정비

-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청렴서약서」 별지 첨부
- 제6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법률자문 실적부」 별지 첨부
- 제12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정보공개 동의서」 별지 첨부

3. 입법 예고기간 : 2025. 9. 25. ~ 10. 15.(20일간)

4.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기획예산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기획예산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여수시청 본청사) 기획예산과
- E-Mail : esm0131@korea.kr
- 전 화 : 061-659-3441
- F A X : 061-659-581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4급 이상의 본청(상시) 국장 8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매월 3건을 초과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게 초과 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인은 여수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따라 법률사항 자문, 소송 수행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원칙과 소신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 여수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적부

고문변호사 ○○○

일련 번호	자문 현황				문의내용	자 문 결 과 ¹⁾		비고
	일 시	자문 ²⁾ 구분	유형 ³⁾	부서명 (담당자)		연월일	회 신 내 용	

1)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 : “서면 답변”으로 기재하고 회신자료 첨부 가능
 2) 자문구분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등으로 구분
 3) 자문유형 : 서면, 면담, 전화

